

국가유산,
미래를 담은 문화재의 새 이름

제2차
국가유산
정책포럼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지자체 행정방향:
지역균형발전을 중심으로

제2차 국가유산 정책포럼

□ 목 적

- 국가유산 체제 전환과 함께 최근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비지정유산 관리, 역사 문화권 정비,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과 같은 국가유산을 활용한 지역균형발전 등의 지방자치단체 행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개 요

- 주 제 :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지자체 행정 방향: 지역균형발전을 중심으로
- 일시/장소 : 2023년 8월 8일(화) 14:30~17:30 /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 참석자 : 문화재청,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 등

□ 세부일정표

[사회] 조일형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팀장)

시 간	일 정	주요내용
14:30-14:35(5')	내빈소개	참석자(내빈) 소개
14:35-14:40(5')	개 회 사	이경훈(문화재청 차장)
14:40-14:45(5')	기념촬영	제2차 국가유산 정책포럼 개최 기념 촬영
14:45-15:05(20')	주제발표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 정상우(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15:05-15:25(20')	주제발표②	○ 국가유산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전략 - 민현석(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25-15:40(15')	휴 식	휴식 및 장내 정리
15:40-17:00(80')	국가유산 정책과제 토론	○ 좌장: 신희권(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 토론 *가나다 순 - 강경록(이데일리 문화부 기자) - 배석희(익산시청 문화유산과장) - 서수정(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손오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조신규(함안군청 학예연구사)
17:00-17:30(30')	질의응답/건의	각 시도별 지자체 담당자
17:30	폐 회	폐회

국가유산,
미래를 담은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지자체 행정방향:
지역균형발전을 중심으로

차 례

“ 개 회 사 ”

이경훈 | 문화재청 차장 · 01

“ 주제발표 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 03

정상우 |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주제발표 ② ”

국가유산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전략 · 15

민현석 |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 론 문 ”

강경록 | 이데일리 문화부 기자 · 33

배석희 | 익산시청 문화유산과장 · 35

서수정 |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37

손오달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40

조신규 | 함안군청 학예연구사 · 43

“ 부 록 ”

국가유산기본법 · 47

국가유산, 미래를 담은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지자체 행정방향:
지역균형발전을 중심으로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 차장 이경훈입니다.

지난 제1차 정책포럼에 이어 오늘 이렇게 국가유산체제 도입을 위한 지자체 행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은 단순히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을 넘어, 지난 60년간 이어온 ‘문화재’ 체제 하에서의 행정을, 국민친화적, 미래지향적 행정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자연·무형 유산이 국가와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유산의 수가 외연적으로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보존·관리·활용함에 있어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다양화·복잡화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유산과 직접 소통하고, 마주하기 위해 각 유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유산’체제의 도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의무와 책임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책포럼의 주요 주제이기도 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현장 담당자분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유산이 최근 대두되는 지역소멸을 극복하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의 방향을 잡아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2차 국가유산 정책포럼을 위해 노력해주신 전문가분들과 지자체 담당자분들 및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든 국민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산,
미래를 담은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지자체 행정방향:
지역균형발전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
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정상우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국가유산기본법 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2023. 8. 8
인하대학교 정 상 우 교수



[목 차]

1. 국가유산기본법 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산 행정
3. 국가유산과 지역재생
4.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산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1-1. 국가유산 보호 원칙 전환과 현장성의 강화

문화유산현장 및 현행 문화재보호법	국가유산기본법	분류체계에 따른 보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유산 현장: "원래의 모습"에서 "원래 모습과 가치"로 완화 현행 문화재보호법: 원형유지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유산 모습과 가치의 보호 포괄적 보호 경관 및 주변 환경과 조화 지속가능한 보호 참여와 향유 증진 면으로서 보호 지역의 정체성 및 발전의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형문화재법: 1) 전형유지 및 민족정체성, 2)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3) 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 자연유산법: 1) 인위적인 간섭 배제 및 자연유산의 고유한 특성 반영, 2) 보존, 관리 및 지속가능한 활용의 조화, 3) 재산권 침해 금지

1-2. 국가유산 보호 범위 확대

❖ 현행 문화재보호법 체제

- 지정문화재 중심의 중점보호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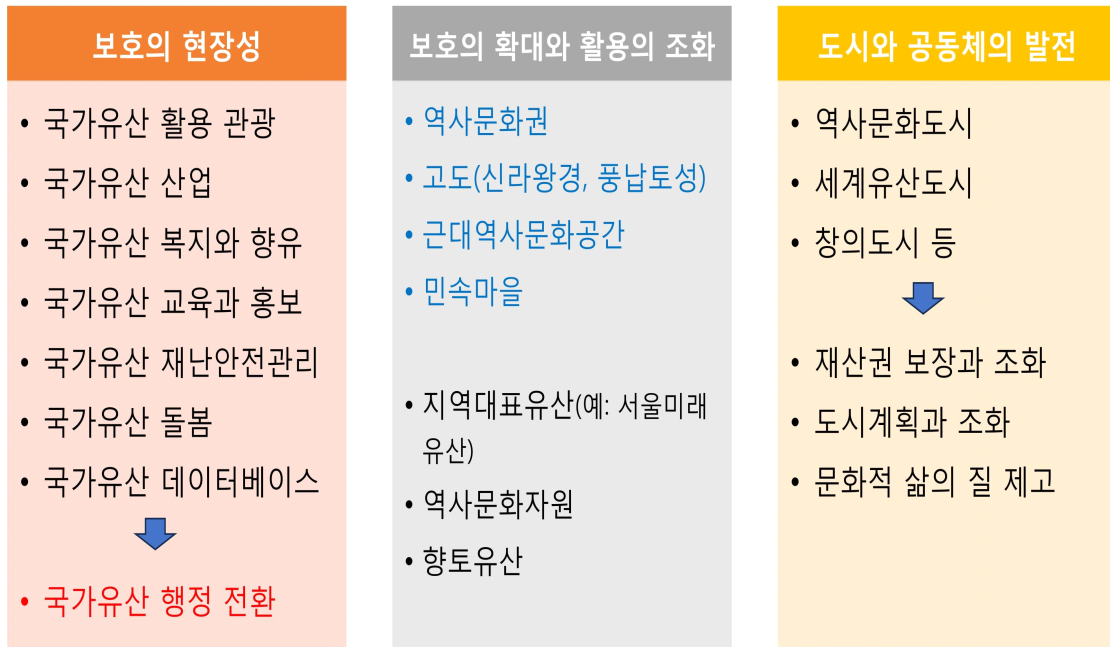


❖ 국가유산 체제

- 포괄적 보호주의
 - ✓ 비지정문화재까지 확대
 - ✓ 목록으로 관리
- 향토유산: 중점주의 vs 대장주의

개선(전)	개선(후)
①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 국가민속문화재 ② 국가무형문화재	① 문화유산, 국가민속유산 ② 국가무형유산 ③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명승)
① 시도유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 시도민속문화재 ② 시도기념물(폐지?) ③ 시도문화재자료	① 시도유형유산, 시도무형유산, 시도민속유산 ② 시도자연유산(명칭 변경) ③ 시도문화유산자료
① 국가등록문화재 ② 시도등록문화재 ※ 유형문화재 한정	① 국가등록유산 ② 시도등록유산 ※ 무형·자연유산까지 확대
① 향토문화재(비지정문화재) ※ 법적근거 無, 유형문화재 한정	① 향토유산 ※ 법적근거 신설, 무형·자연유산까지 확대

1-3. 국가유산체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1.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산 행정

❖ 시도지정유산의 유형

- 현행
 - ✓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및 문화재자료(2등급화)
- 개선 방향
 - ✓ 시도기념물 중 천연기념물과 명승에 해당하는 것은 시도자연유산으로 변경
 - ✓ 문화재자료: 문화유산의 경우 존속 가능하나, 삭제하고 시도지정유산의 분류체계 또는 향토유산으로 편입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문화재보호법 개정 사항)

❖ 지역대표 유산 선정

- 서울 미래유산, 인천 미래유산 등 대표유산 선정 가능
- 지역의 정체성, 지역 활성화
- 국가유산과 중복 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원 또는 활용 정책 필요

2-2. 향토유산

❖ 국가유산기본법의 포괄적 보호주의

- 대장주의(목록화): 중점보호주의와 같은 지원 없음
-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향토유산에 대한 지원 기대

❖ 중점보호주의 경향 우려

- 국가유산-시도유산-향토유산
- 가치에 따른 등급 체계
- 지정 이후 비지정 향토유산이 여전히 존재

❖ 대상: 동산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목록화는 가능)

-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에서는 동산 이미 제외, 예비문화재 제도 도입 준비 중(주로 동산 선정)
- 근현대유산 전수조사 등에서 동산 목록화
- 박물관 미술관 소장품은 목록화 되어 있고 데이터를 공유
- 개인 소장품은 이동성으로 인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기 어려움

2-3. 조례

❖ 광역자치단체

- 문화재조례와 무형문화재 조례(16곳)
 - ✓ 전라남도는 미분리
- 무형문화재 조례는 무형유산 조례로 개칭
- 자연유산 조례 신설 여부
 - ✓ 단기적으로는 현행 문화재 보호 조례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조례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
 - ✓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차이도 있으므로 자연유산 조례 기대

❖ 기초자치단체

- 현재 향토문화재, 향토문화유산 등 230여개 조례
- 문화유산에 한정된 향토유산도 가능하고 지역에 따라 자연유산 선정 가능하도록 규정
- 향토유산 아래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구별하여 목록화할 수도 있음
- 근대건조물, 갯벌, 특정무형유산 등 지역 특성 반영한 조례 제정 가능

2-4. 지방 문화재 행정의 인력 부족

❖ 지방자치단체 관리 문화재 현황: 약 1만 2천건(2022년 12월)

- 국보 354, 보물 2,351, 사적 526, 명승 131, 천연기념물 475, 국가민속문화재 308, 국가무형문화재 155, 국가등록문화재 952
- 국가지정문화재 5,907건 중 국가 소유 1,375건, 지자체 398건 / 국가 관리 849건, 지자체 관리 1,790건
- 시도유형문화재 4,054건, 시도기념물 1,760건, 시도민속문화재 475건, 시도무형문화재 592건, 시도등록문화재 66건, 문화재자료 2,880건=9824건

❖ 문화재 전담 인력(2022년 9월)

- 광역자치단체 문화재 관리인력 367명 중 학예직 73명(19.9%)
- 기초자치단체 문화재 관리인력 1,497명 중 학예직 248명(16.6%)
- 학예직 공무원이 1명도 없는 곳 91곳
-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전담인력 의무화 필요

2-5. 지방 문화재 행정의 인적 자원 확충 지원

❖ 문화재 행정 인력 확충

-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의 문화재전담관 및 문화재전문인력
- 지역 문화재연구소 확대

❖ 문화재 거버넌스

- 발굴조사기관 및 문화재수리업
- 지역문화재돌봄센터
- 문화재 재단(센터) 확대
- 문화재관리단체 다양화

❖ 인력 확충 방안

- 문화재관리사 자격 제도 도입
- 문화재 행정 담당 전문인력 확충
- 문화재 행정 담당 인력 교육

3-1. 지역재생에 국가유산 활용 가능성

❖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산 보호 역량의 어려움

- 지역주민들의 개발 욕구(문화재 지정 또는 등록 기피, 역보지역 축소 등)
- 국가유산 활용 상품의 경제성 한계
- 인구감소로 인한 관리의 어려움

❖ 지속가능한 보존 모델 확산

- 국가유산 보호를 지역재생과 연계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원
- 경관 보호와 관광
- 문화재교육과 생태교육 등을 활용한 대안교육

3-2. 지역재생에 국가유산 활용 방안

❖ 면으로서 보호

- 고도, (고대)역사문화권, 근현대역사문화지구, 민속마을
- 장소성을 갖는 무형문화재도 가능
- 지방자치단체 자체 계획 확대
- 세계유산도시 또는 창의도시 선정 및 모델로 발전

❖ 특별보호 방안

- 도시계획과 연계
- 관광상품화 및 국가유산산업 콘텐츠 개발
- 주민지원사업 및 국가유산보호협약(관리 조건으로 지원)

3-3. 국가유산 관광 및 산업

❖ 국가유산 관광

- 광역자치단체의 지원: 권역별 국가유산 연계 관광 코스
-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
-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

❖ 박물관 및 미술관, 무형문화재 전수관

-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국가유산 소장품 확충 및 전시 활성화
- 무형문화재 전수관 활성화

❖ 국가유산 산업

- 역사문화자원 활용한 산업화(원형유지원칙 완화 또는 의미 재정립)
- 국가유산 활용한 문화콘텐츠(문화콘텐츠의 원형은 국가유산)
- 지역의 무형유산의 산업화
- 지역의 국가유산 상품화

3-4. 국가유산 교육

❖ 국가유산 보호 방법으로서 교육

- 학생 및 주민 대상 교육
- 교육은 참여와 향유
- 국가유산의 경제성 제고는 국가유산교육에서부터 시작

❖ 국가유산과 문화다양성

- 국가유산기본법의 지역 강조 정신은 다양성 존중
- 교육은 지역정체성: 지역 대학의 역사, 예술, 문화, 관광 등 국가유산 교육 강화 기대

❖ 국가유산교육의 특징과 방향

- 통합교육, 학제간 교육으로서 국가유산 교육: 역사, 문화, 예술, 과학, 기술, 환경 등
- 교사교육: 사대 및 교대에서 문화유산교육 활성화(지방자치단체 지원)
- 국가유산 교육 교과목 채택 확대(교육청과 협력)

3-5. 세계유산도시 및 유네스코 창의 도시

❖ 세계유산도시

- 문화유산, 자연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기록유산 등 활용한 세계유산도시
- 세계유산지구 지정 및 보호

❖ 유네스코 창의도시

- 문학, 영화, 음악, 공예 및 민속예술, 디자인, 미디어예술, 음식 등 7개 분야
- 과거 한국의 창의도시 실패: 국가유산(문화다양성)에 기반한 콘텐츠 부족
- 창의도시 7개 분야는 국가유산과 연계 가능(국가유산과 현대예술 연계)

❖ 국가유산 활용 창의도시 지향

- 유형, 무형, 자연유산 등과 지역발전의 결합
- 축제, 공예 등 실패 사례의 반면교사(획일화 지양)
- 지역 정체성에 기반한 국가유산 - 전통문화 - 현대예술 연계
- 원형유지가 존중되어야 하는 부분과 이미지 또는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는 부분을 정교하게 구분

4-1.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

❖ 국가지정에 대한 직영 관리 강화

- 공능유적본부, 칠백의총 관리소, 만인의총 관리소 등
-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가급적 국가가 관리

❖ 문화재청 소속기관들의 기능 확대

- 국립문화재연구원 및 지방 문화재연구소: 지역의 문화재 보호 지원 강화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과 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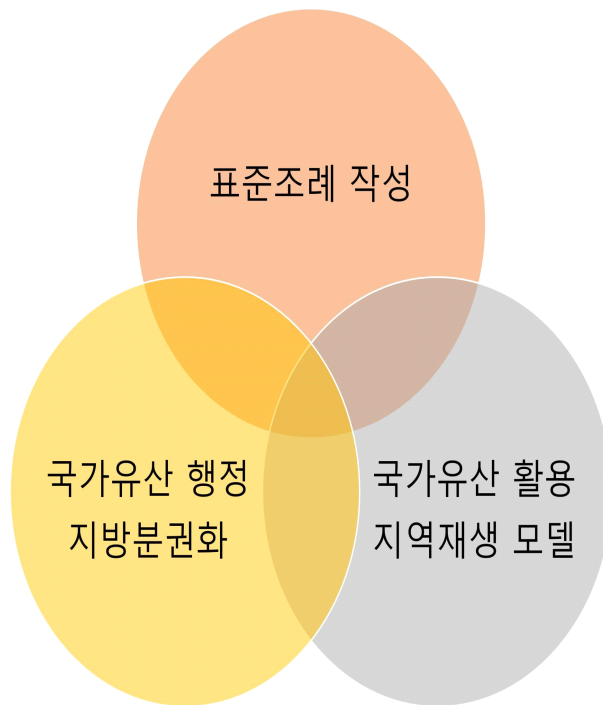
❖ 국가유산 보호 인력 확충

-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인력 교육 및 기술 지원
- 국가유산 전담부서 설치 지원
- 지역의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소방, 경찰 등 인력 확대

❖ 국가유산 보호 시설 및 재원 확대

-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예산 지원
- 역사문화권, 고도, 근현대역사문화지구, 민속마을 등 주민지원
- 국가유산 활용지역재생 사업에 대한 특별 지원
- 국가유산보호를 위한 IT, CCTV, 재난안전시설, 보호시설, 관람시스템 등 확충

4-2. 법적 및 정책적 과제



감사합니다

국가유산,
미래를 담은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지자체 행정방향:
지역균형발전을 중심으로

주제발표
②

국가유산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전략

민 현 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가유산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전략

공간교통연구실 민현석 선임연구위원

서울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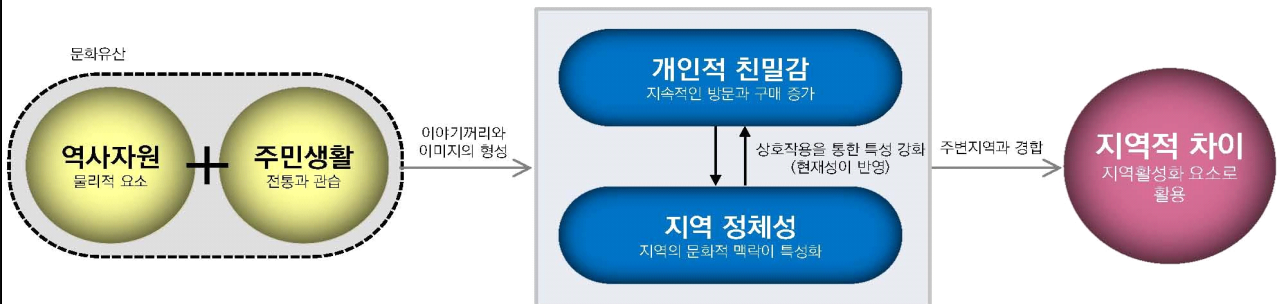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전략의 가능성

2

(문화)유산에서 형성된 지역적 차이는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친밀감을 제공

-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투영되면서 고유한 이야기꺼리와 이미지가 형성
- 지역의 고유한 이야기꺼리와 이미지가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친밀감을 제공하면서 지역의 문화적 맥락을 특성화
- 한편 문화유산을 매개로 형성된 문화적 맥락이 주변지역과 결합하면서 발생한 지역적 차이는 지역 활성화 요소로 활용 가능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이 지역활성화 요소로 발전하는 메카니즘



세계유산에 상응하는 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

遺産

Heritage

과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현재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자산

文化財

Cultural Assets

+

의미의 확장

전통, 정신, 역사 등
비물질적인 가치

Immaterial Elements

지역활성화 전략의 대상

기존의 지정·등록문화재 중심에서 비지정 유산과 잠재적 유산들까지 보호하는 포괄적 보호체계로 전환

- 국가유산의 범위가 역사문화자원으로 확대되면서 이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의 가능성도 증가
- 특히 민간영역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다각적인 지원이 요구

		국가유산			세계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건축물 유적 미술 기록 과학 고고자료 산업생활 민속	동물 식물 지형지질 (화석/암석)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복합경관	전통적공연예술 공예미술전통기술 전통지식 구전전통표현 의식주 생활관습 민간신앙의식 전통놀이축제	
	지정	국보/보물/사적 국가민속유산	천연기념물/명승	국가무형유산	
		시도지정 문화유산	시도지정 자연유산	시도지정 무형유산	
	등록	국가등록유산/시도등록유산			
	부록	기초단체 향토유산			
제안대상 비교적 보호의 강도가 낮은 민간소유의 유산으로 지자체 차원의 지원정책으로 자발적인 관리과 지역 활성화 유도가 가능한 유산	포괄적 보호대상 (역사문화자원)	지정 인정보록	건축자산(진흥구역)		
			미래유산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경관계획/도시재생	백년가계/오래가계	

국가유산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프로세스

국가유산의 비물적 가치에서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를 도출하고 전달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브랜드 창출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사례

지역 활성화 사업의 대상인 (문화)유산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사업방식을 제안

사업대상	사례연구	물리적형태	사업주체	사업방식
역사적 장소	게티스버그 전투	지역	시민	문화행사
제품·기술	삿포로 맥주박물관	단지	민간	건축물수선
	장수막걸리	상품	민간	상품브랜딩
시장	무라노 유리공예	지역	공공	상품브랜딩
	산 미구엘 시장	단일	상인	시장활성화
오래된 가게	대오서점	단일	민간	상품브랜딩
	중앙탕	단일	민간	건축물수선
골목·마을	보장암 예술마을	마을	공공	도시재생
음식	남대문 테이스팅 투어	단지	민간	관광투어
건축물	살아있는 건축 박물관	지역	공/민	관광투어
	반달 할아버지 가옥	단일	공공	공공매입/수선
명사관련장소	이상의 집(터)	단일	시민	문화행사
	제임스조이스 문학	무형	공공	문화행사
음악	광화문연가	무형	민간	예술창작

* 기존 용도를 전용하여 활용하고 있는 경우, 음영 처리



사례연구: 게티스버그 전투

역사적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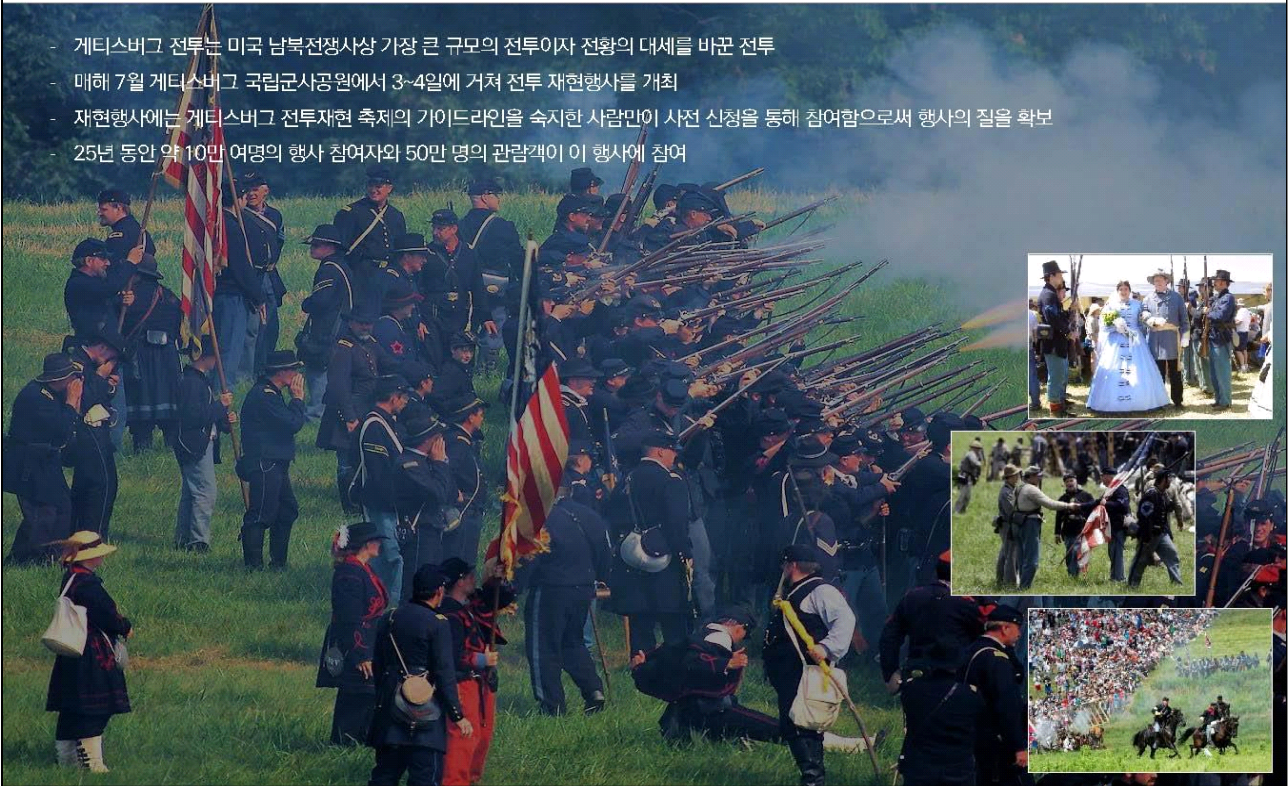
지역

시민

문화행사

7

- 게티스버그 전투는 미국 남북전쟁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전투이자 전환의 대세를 바꾼 전투
- 매해 7월 게티스버그 국립군사공원에서 3~4일에 걸쳐 전투 재현행사를 개최
- 재현행사에는 게티스버그 전투재현 축제의 가이드라인을 숙지한 사람만이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함으로써 행사의 질을 확보
- 25년 동안 약 10만 여명의 행사 참여자와 50만 명의 관람객이 이 행사에 참여



사례연구: 삿포로 맥주박물관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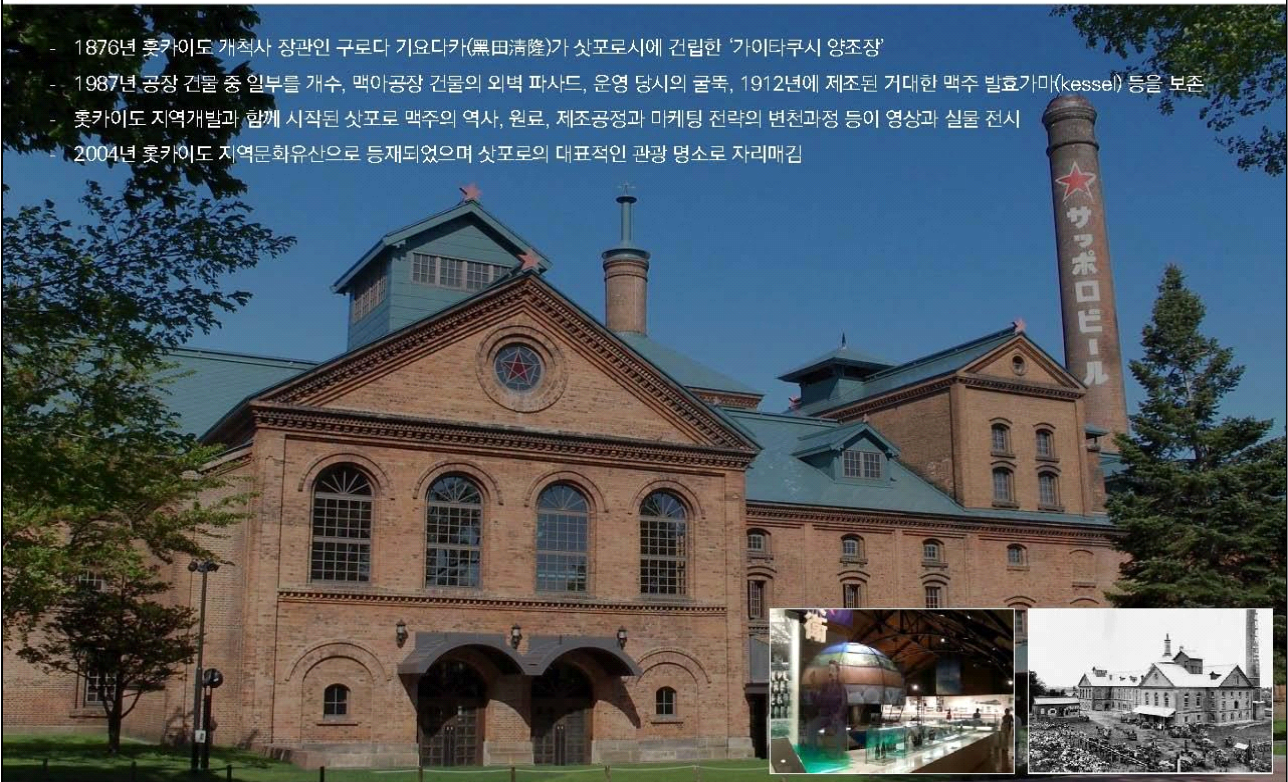
단지

민간

건축물수선

8

- 1876년 홋카이도 개척사 장관인 구로다 기요다카(黒田清隆)가 삿포로시에 건립한 '가이타쿠시 양조장'
- 1987년 공장 건물 중 일부를 개수, 맥아공장 건물의 외벽 파사드, 운영 당시의 굴뚝, 1912년에 제조된 거대한 맥주 발효기(kessel) 등을 보존
- 홋카이도 지역개발과 함께 시작된 삿포로 맥주의 역사, 원료, 제조공정과 마케팅 전략의 변천과정 등이 영상과 실물 전시
- 2004년 홋카이도 지역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삿포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사례연구: 장수막걸리

제품

상품

민간

상품브랜드

9

- 1962년 설립하여 서울탁주제조협회에서 판매해 온 서울 대표 막걸리 브랜드
- 2018년 서울 미래유산 상징도안을 막걸리병 포장라벨지에 도입하는 한편 이듬해 마포구 망원동 본사 1층에 '막걸리 체험관'을 시범 개관
- 서울 미래유산 상징 도안의 도입으로 브랜드가치 향상, 막걸리 체험관의 원데이 클래스는 매회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기록



사례연구: 무라노 유리공예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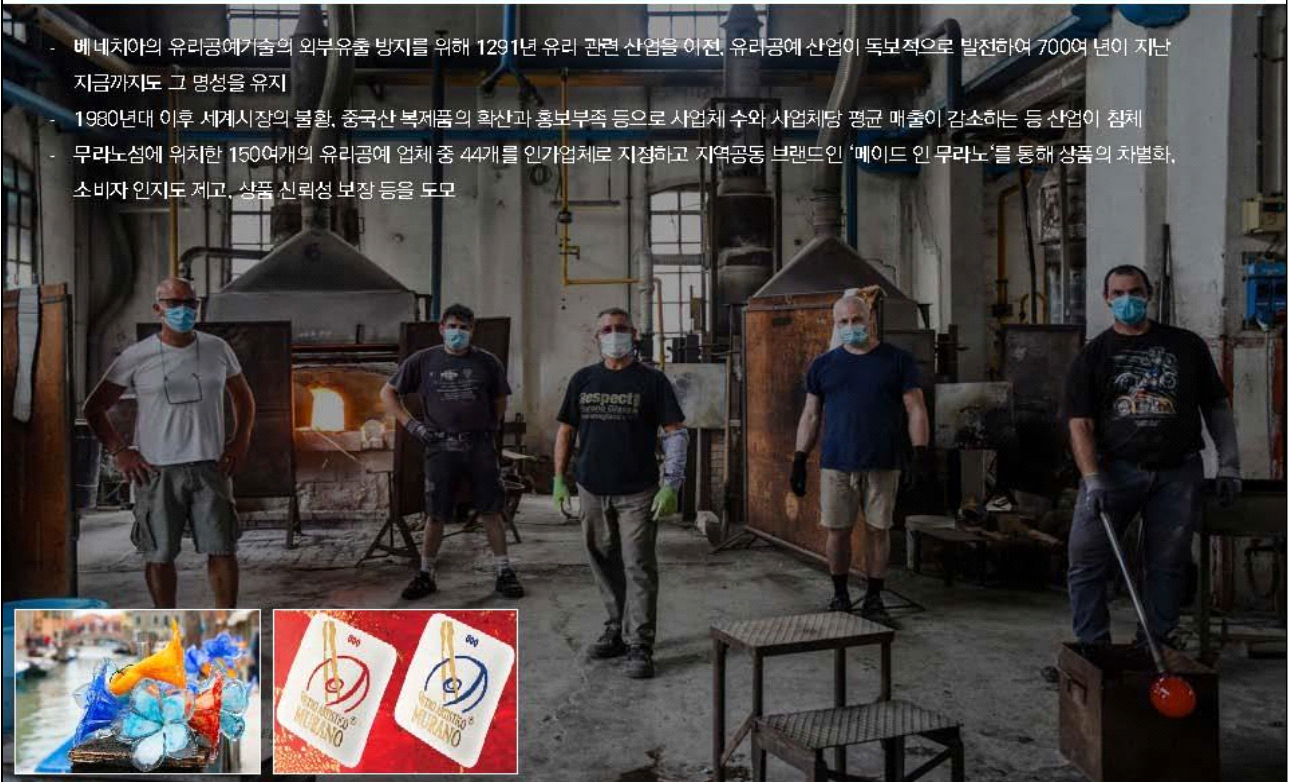
지역

공공

상품브랜드

10

- 베네치아의 유리공예기술의 외부유출 방지를 위해 1291년 유리 관련 산업을 이전, 유리공예 산업이 독보적으로 발전하여 7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명성을 유지
- 1980년대 이후 세계시장의 불황, 중국산 복제품의 확산과 홍보부족 등으로 업체 수와 업체당 평균 매출이 감소하는 등 산업이 침체
- 무라노섬에 위치한 150여개의 유리공예 업체 중 44개를 인가업체로 지정하고 지역공동 브랜드인 '메이드 인 무라노'를 통해 상품의 차별화, 소비자 인지도 제고, 상품 신뢰성 보장 등을 도모



사례연구: 산 미구엘 시장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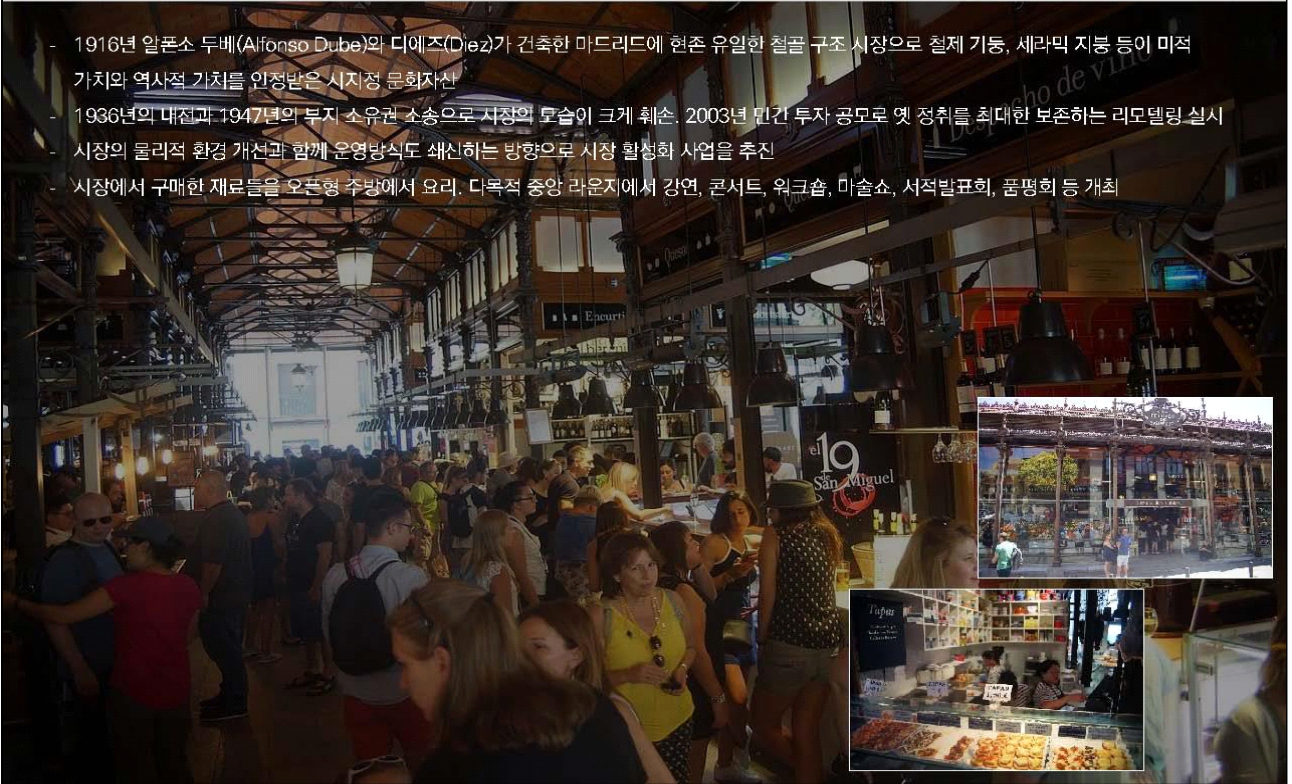
단일

상인

시장활성화

11

- 1916년 알폰소 두베(Alfonso Dube)와 디에즈(Diez)가 건축한 마드리드에 현존 유일한 철골 구조 시장으로 철제 기둥, 세라믹 지붕 등이 미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시지정 문화자산
- 1936년의 대전과 1947년의 부지 소유권 소송으로 시장의 모습이 크게 훼손. 2003년 민간 투자 공모로 옛 정취를 최대한 보존하는 리모델링 실시
- 시장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함께 운영방식도 쇄신하는 방향으로 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
- 시장에서 구매한 재료들을 오픈형 주방에서 요리. 다목적 중앙 라운지에서 강연, 콘서트, 워크숍, 미술쇼, 서적발표회, 품평회 등 개최



사례연구: 대오서점

오래된 가게

단일

민간

상품브랜드

12

- 1951년 종로구 누하동에 위치한 한옥 서점. 1970-80년대 전성기를 맞이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대형서점의 등장과 온라인 도서판매가 보편화되면서 쇠락
- 2013년 12월 한책 판매를 중단하고 한책당과 딸린 살림집 전체를 북카페로 전환
- 실내 곳곳에는 대오서점의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사진과 삽화 등이 전시. 대오서점이 그려진 그림엽서나 책갈피, 수첩 등의 기념품을 판매
- 안마당에서는 대오서점의 대표적인 문화이벤트인 '평상음악회'가 개최



사례연구: 중앙탕

오래된 가게

단일

민간

건축물수선

13

- 45년 간 영업 후 폐업한 북촌의 대중목욕탕을 임대하여 젠틀몬스터의 제품(안경/선글라스)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리모델링
- 과거 목욕탕 건물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간판을 비롯한 외관을 본래의 모습 그대로 보존하는 한편 목욕탕의 욕탕, 타일, 보일러 등 기존 내부시설을 인테리어 요소로 적극 활용



사례연구: 보장암 예술마을

골목·마을

마을

공공

도시재생

14

- 1960년대 상경한 도시 이주민에 의하여 형성된 타이페이의 대표적인 판자촌
- 1980년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불법 건축물 철거사업이 강행, 마을보전을 위한 사회운동계와 역사·문화단체, 지역주민의 반발 발생
- '보장암 역사마을보전 및 예술촌 조성계획'에 따라 국내외 예술가들이 보장암공생예술촌에 입주하여 전시·공연 등의 창작활동을 전개
- 사업을 통하여 보장암 주민이 다시 마을로 되돌아왔으며 마을의 독특한 경관이 살아나고 지역이 활성화



사례연구: 남대문 테이스팅 투어

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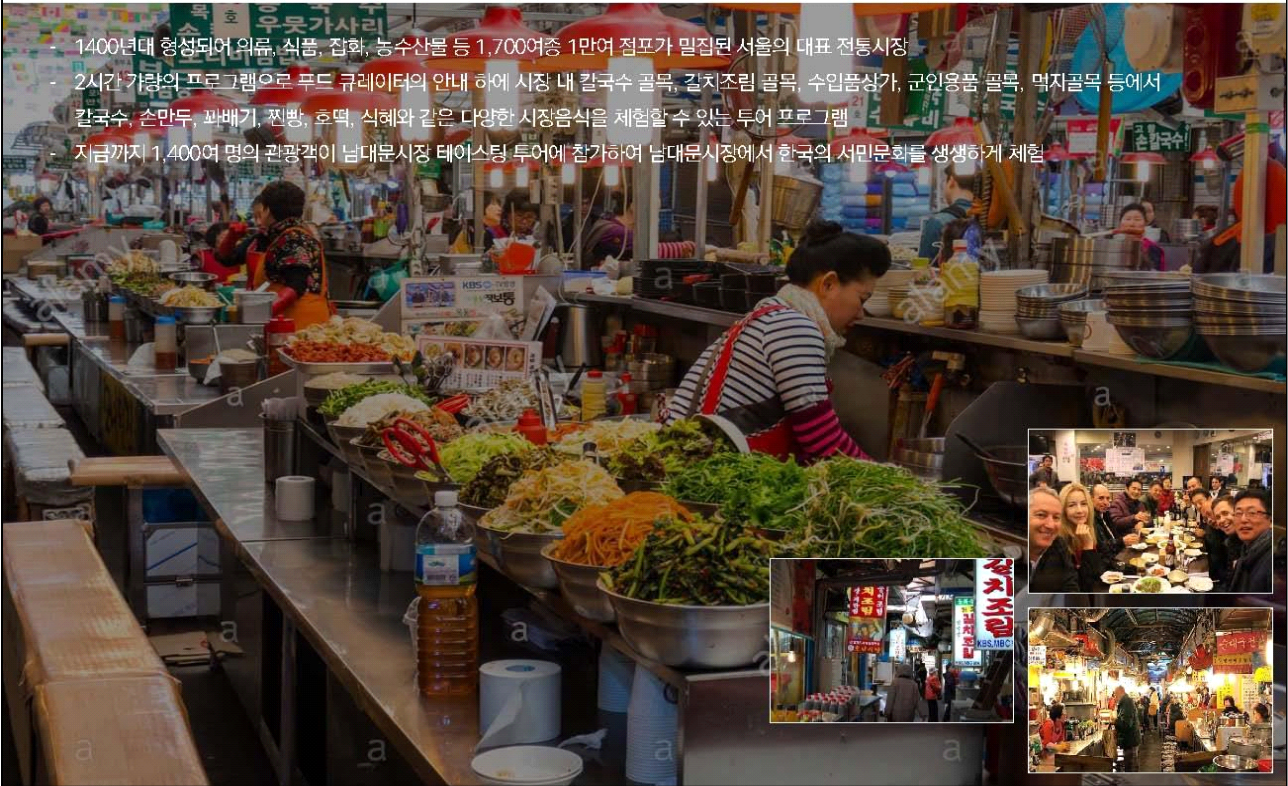
단지

민간

관광투어

15

- 1400년대 형성되어 의류, 식품, 잡화, 농수산물 등 1,700여종 1만여 점포가 밀집된 서울의 대표 전통시장
- 2시간 가량의 프로그램으로 푸드 큐레이터의 안내 하에 시장 내 칼국수 골목, 길치조림 골목, 수입품상가, 군인용품 골목, 먹지골목 등에서 칼국수, 손만두, 파배기, 찜빵, 후떡, 식혜와 같은 다양한 시장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
- 지금까지 1,400여 명의 관광객이 남대문시장 테이스팅 투어에 참가하여 남대문시장에서 한국의 서민문화를 생생하게 체험



사례연구: 살아있는 건축 박물관

건축물

지역

공/민

관광투어

16

- 16세기 후반 개발된 오사카의 센바(船場) 지역에는 전통적인 초가(町家)부터 근대건축물까지 다양한 건축물이 특색 있는 경관을 형성
- 지역의 건축 공간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역의 매력을 창조·발산하기 위하여 '살아 있는 건축 박물관' 행사를 운영
- 기존의 건축 투어 프로그램은 참가인원이 제한되고 건물 내부의 자유로운 견학이 어려운 제약이 존재
- 각 건물 건축주들과 협업하여 건축물 내·외부를 대중에게 공개. 투어, 사진전, 세미나, 토크쇼, 라이트업(light up) 이벤트 등 프로그램 제공



사례연구: 반달 할아버지 가옥

명사관련장소

단일

공공

공공매입/수선

17

- 동요 '반달' 등 1백여 편이 넘는 동요를 작사·작곡하는 등 어린이 문학 활동에 평생을 바쳤던 윤극영이 1977년부터 타계할 때까지 거주하였던 주택
- 시민들이 함께 윤극영 선생의 근대 어린이 문학에 끼친 영향을 기념하고 그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도록 '윤극영 가옥'을 미래유산으로 지정
- '서울시 미래유산 보전사업'의 일환으로 유족으로부터 주택을 매입하여 기념관(반달할아버지 가옥)으로 리모델링
- 윤극영 생전에 사용하던 안방의 모습을 원형 그대로 보존. 이외 지역주민의 사랑방이자 교육공간으로 활용되는 다목적실 등을 마련
- 가옥 보전과 함께 현재와 미래의 세대가 반달할아버지에 대한 추억과 감성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사례연구: 이상의 집(터)

명사관련장소

단일

시민

문화행사

18

- 1922~1933년 시인·소설가·수필가·건축가인 이상(李箱) 김해경(金海卿)이 머물렀던 백부 김연필의 통인동 자택 터
- 통인동의 도시적 맥락이 잘 남아있고 이상과 연고가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점에서 이듬해 2009년 '문화유산국민신탁'이 이상의 집을 매입
- 2011년 개관 이후 주민, 문학인, 젊은 예술인 등이 참여한 예술프로젝트 '이상과의 대화', 안무 '이상을 위한 이상한 개인 레슨'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
- 2014년에는 미래유산 민간단체 공모사업을 통하여 이상의 생일날인 9월 23일에 맞추어 '이상 생일전차'를 개최



사례연구: 제임스 조이스 문학

문학

무형

공공

문화행사

19

- 제임스 조이스는 아일랜드의 대표적인 문학가로 「더블린 사람들」, 「젊은 예술가의 초상」, 「율리시즈」를 집필
- 제임스 조이스 센터에서는 제임스 조이스가 살았던 공간이자 작품의 배경이 되었던 더블린 도심의 배경으로 도보관광 프로그램, 각종 문학 강연, 블룸스데이 축제 등의 다양한 행사를 기획·운영
- 1996년 「율리시즈」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인 마기니(D. Maginn)가 살던 집을 리노베이션하여 제임스 조이스 센터를 개관
- 제임스 조이스 소설의 주요 배경과 그가 방문하였던 주요 장소를 중심으로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도심 활성화에 기여



사례연구: 광화문연가

음악

무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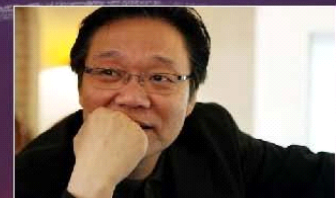
민간

예술창작

20

- <광화문 연가>는 작곡가 이영훈이 작곡한 32개의 곡을 엮어 만든 어트리뷰트 뮤지컬(attribute musical)
- 이영훈은 2003년 음반활동 은퇴 후, 그의 히트곡으로 구성된 뮤지컬 <광화문 연가>의 대본 작업을 구체화. 그러나 대장암으로 2008년 짧은 생을 마감
- 2008년 그의 죽음으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게 되자 프로듀서 임영근과 김승현이 그를 대신하여 작품을 마무리, 2011년 첫 상연
- 이영훈의 명곡을 하나의 이야기로 새롭게 재해석한 어트리뷰트 뮤지컬로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충족

광화문
연가



국가유산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전략의 실현 조건_중앙정부

기존의 획일적인 보호·관리에서 지역특성을 살린 유연한 활용·진흥으로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 제시 필요

- 문화재에서 유산으로 국가유산의 정의가 확대된 만큼 보호·관리와 활용·진흥 모두를 실현할 수 있는 모델개발이 필요
 -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보다는 관련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하여 기존제도를 종합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 검토
- 포괄적 보호(보전?)체계 내 비지정유산과 잠재유산(에비유산? vs 역사문화지원?)의 정의와 범주를 명확화
 - 활용·향유·진흥의 강도 조율을 통하여 유산의 진정성문제 해소
- 포괄적 보호체계 내 유산의 경우, 지자체의 역량강화, 권한 및 지원확대

미래유산 활용사례_공모사업



국가유산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전략의 실현 조건_중앙정부

획일적인 균형을 강조하는 지역활성화 정책에서 탈피, 유산을 매개로 형성된 지역적 차이를 존중, 조화를 중시해야

- 지역의 문화유산에는 (현재)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는 감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맥락이 투영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화적 맥락이 장소적 차이를 형성
- 그러나 모든 유산에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는 지역 활성화 정책은 문화 다양성을 저해시키는 동시에 소모적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을 발생
 -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발현되는 장소적 차이(difference)를 격차(disparity)로 인식하여 일괄 적용되는 평균수준의 공간균형(spatial equilibrium) 지원정책 추진
- 따라서 유산의 획일적인 해석과 활용에서 탈피, 현재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접근방식의 수용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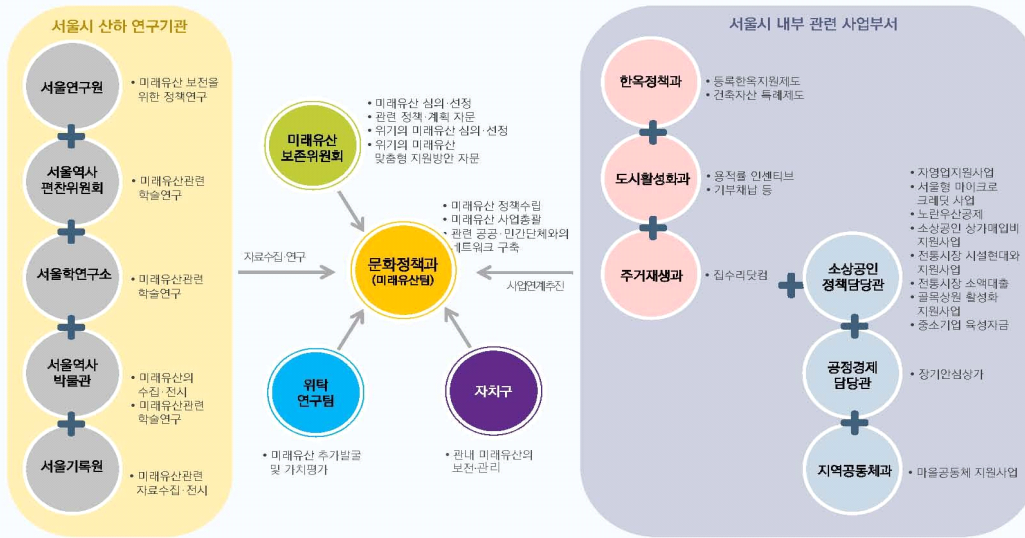


국가유산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전략의 실현 조건_지방정부

관련 부서 간의 협력 강화로 종합적이고 유연한 지역활성화 정책 마련이 요구

- 기부채납, 규제완화, 시설매입, 운영지원, 마을사업, 문화재등록, 도보관광, 경영컨설팅, 보조금·대출지원, 분쟁상당·조정 등 지자체 내부의 지원프로그램을 패키지로화

[서울시·자치구 관련부서와의 업무공조강화 방향_서울 미래유산]



[참고자료] 연계 가능한 서울시 내부 지원사업 검토

- 민간소유 유산의 특성에 따라 분류

분류	사업명	사업개요	주요내용	지원대상	주관 부서
오래된가계	서울시 자영업 지원사업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인정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상담, 창업컨설팅, 자영업 클리닉,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 시설개선, 사업정리 및 재기, 현장체험, 자영업 협업체, 지역밀착 총합지원 등의 9개 프로그램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서울시 자영업 지원센터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업현대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지원자금의 기여율 제고를 위한 컨설팅	운전자금 15중(연매출액의 1/2~1/6 5억원 한도), 시설자금 11중(소요자금의 75~100% 200만원 한도)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 담당관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은퇴에 대비하여 생활 안정 및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을 마련	가입시 월 2만원의 회망 정려금 1년간 지원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경우), 무료 상해보험 가입, 공제계약 대출 가능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광업/건설업/운수업, 농업/임업/어업/금융, 보험업 등 10개 업종 중소기업·소상공인	
	장기인심상가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을 장기인심상가로 지정하여 리모델링 비용 지원	리모델링비 6,000만원 한도 지원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서울시 소재 임대사업자(환상보증금 9억원 이상, 계약기간 10년 미만, 자임인상률 2% 초과 제외)	공정경제 담당관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	시민들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7가지 분야(상가임대차 ②가맹·유통, ③대부업 ④문화예술, ⑤다단계, ⑥선불식 할부거래업, 소비자피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분쟁을 상담 및 조정	전문상담(홈페이지, 전화·화상, 방문), 교육 자료배포	서울시민(상가임대차는 임대·임차인,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인 및 프리랜서에 한정)	
특화가로시장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시장의 상업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자 할 경우, 사업비 일부를 지원·보조	안전·화재예방시설, 필수기반시설, 보행편의시설, 고객편의시설, 판매지원시설, 홍보안내 시설 등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서사업 추진주체를 갖춘 시장	소상공인 정책 담당관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지역경제 침체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골목상권의 로컬브랜드를 육성, 지원	지역기반 로컬콘텐츠를 반영한 상권 단위 3단계(기반사업, 브랜드화, 자생력강화) 지원	서울형 골목상권이 50% 이상 포함된 상권(대표조직 구성필요)으로 해당 상권의 소상공인 1/2 이상이 사업에 동의	
마을골목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삶을 계획하고 사업실행주체가 될 수 있도록 씨앗기, 섹서기, 성장기 3단계로 맞춤형 지원	서울시 지원사업(서울시 9개, 서울마을센터 4개), 자치구 지원사업	지역주민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	지역 공동체과
건축도목	서울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거주자가 직접 또는 전문 업체를 통해 집수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	집수리전문관, 집수리 아카데미, 공구임대, 집수리 보조·융자사업, 집수리 시공업체, 집수리 성공기 등 7개 서비스 제공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	주거 환경과
	한옥등록제도	서울시 소재 한옥을 등록하여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	수선 및 신축 시 공사비 지원, 세금감면(중로구, 성북구), 거주자 우선주차장 우선배정(중로구)	서울시 내 등록한옥	한옥 정책과

감사합니다

국가유산,
미래를 담은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지자체 행정방향:
지역균형발전을 중심으로

특
보
문

강경록 | 이데일리 문화부 기자

배석희 | 익산시청 문화유산과장

서수정 |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오달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신규 | 함안군청 학예연구사

국가유산의 관광 활용, 벤처기업 육성에 답 있다

강 경 록

이데일리 문화부 기자

문화는 산업이다. 이미 K-콘텐츠는 우리의 수출 주력 상품으로 떠올랐다. 2021년 기준 콘텐츠 수출액(124.5억 달러)은 가전제품(86.7억 달러), 전기차(69.9억 달러), 디스플레이 패널(36억 달러)을 추월했을 정도다. 수출시장의 떠오르는 스타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K-콘텐츠의 원천은 K-컬처다. K-컬처 팬덤은 1억 6000만 명 규모로 알려져 있다. 이들에게 K-헤리티지(국가유산)를 가고 싶은 나라, 경험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로 각인시켜야 한다.

관건은 국가유산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있다. 유산을 활용한 K-콘텐츠로 국가이미지 제고, 연관 산업 성장을 앞당겨 지역경제를 살리는 핵심산업으로 키워야 한다.

국가유산 활용의 가장 큰 주축은 '정부'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유산 활용 로드맵을 잘 구축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개방한 청와대다. 청와대 개방의 파급력은 대단했다. 청와대 개방으로 매년 2000억원 상당의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게 우리 정부의 추산이다.

물론 비판도 있었다. 청와대를 개방하기 전 정부가 청와대 본관과 영빈관 등 주요시설을 고급 미술관과 상설 공연장으로 바꾸는 복합문화예술 공간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의 성급한 조치를 비판했다. 당시 자문단은 청와대 전반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해 '역사 문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한했다. 청와대 활용방안은 여전히 오리 무중이다. 개방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은 없다. 정부의 국가유산 활용 로드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정부가 국가유산 로드맵을 세웠다면 이를 구현할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민간의 역할이다. 국가유산 활용에 있어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 또한 민간의 참여다. 민간의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국가유산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대답이 결국 '소비자'에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핵심가치는 '이익 극대화'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한복입기 열풍의 주역인 '한복남'은 국가유산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좋은 기업이다. 이 기업은 서울 종로구 인사동을 비롯해 광화문 일대에서 10~20대 젊은층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복대여를 하고 있다. 이 회사의 대표인 박세상은 “2012년부터 기획한 한복 문화활성화 프로그램 ‘한복데이’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한복문화를 만들기 위해 2015년 한복남을 설립했다”면서 “한복을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한복대여사업을 넘어 전통 음료·스튜디오·한복파티 등을 상품화하는 등 한복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자신의 회사를 소개했다. 한복입기의 열풍은 MZ세대(10~20대)와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을 경복궁, 인사동 등으로 이끌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복궁이 명소로 떠올랐고, 경복궁에 대한 관심과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관심도 이끌어냈다.

문화재청의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도 대표적인 국가 유산 활용 사업이다. 이 사업은 경제 유발 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다. 국가유산 미디어아트사업은 국가유산과 예술, 디지털을 결합하여 제작된 작품. 국가유산에 프로젝션맵핑,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XR(확장현실), 인터랙티브 아트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 복합매체예술로 무한한 상상력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게 최대 장점이다.

이 사업의 시작은 2021년부터였다. 코로나19라는 긴 어둠의 터널에서도 우리 국민에게 지역 유산의 가치를 더 쉽게 알렸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침체한 관광산업 재개에 기폭제가 됐다. 미디어 아트가 열리는 곳마다 시민과 관광객 방문이 이어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했다. 또 전 세계 한류 팬에게 지역 세계유산의 아름다운 풍광을 알려 방한 관광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 사업의 주축도 바로 미디어아트 관련 기업들의 참여에 있다. 이런 기업들이 국가유산을 활용해 사업화에 성공한다면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광주의 시티투어버스 ‘광주 100년 이야기’도 민간이 국가유산을 관광과 잘 활용한 좋은 예다. 이 시티투어버스는 1980년대를 기준으로 1930년대의 광주와 역사, 그리고 미래를 향한 문화중심 도시, 광주의 100년을 둘러보는 여정으로 구성했다. ‘광주 100년 이야기 버스’, 즉 ‘스토리 시티투어버스’다. 여타 도시가 주요 관광지를 나열식으로 소개한다면, 광주시티투어는 핵심 관광지의 이야기를 연극과 음악 등으로 융합했다. 이른바 ‘장소와 공연’을 결합한 시티투어인 셈이다. 이야기 중심인 장소는 크게 세 곳이다. 1930년대의 ‘양림동골목’, 1980년대의 ‘5·18민주광장(이하 오월광장)’, 2030년대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다. 여행은 100년의 세월을 ‘음악’이라는 매개체로 각 시대 청년들의 삶을 이야기한다. 여기에 광주가 가진 구석구석의 숨겨진 이야기와 매력적인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비친다.

국가유산활용에 있어 정부가 로드맵을 세우고, 그 바탕 위에 민간 기업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로 꾸민다면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국가유산 정책포럼 토론문

배 석 희

익산시청 문화유산과장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지자체 행정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에 지자체 대표로 참여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국가유산 체제 전환으로 문화유산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환영합니다. 지자체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규모도 사업양도 다 제각각이겠지만 이번 국가유산 체제 전환으로 지자체의 업무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유산의 범위 확대로 비지정 문화유산 관리가 가장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물론 그간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향토유적, 비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조사와 지정 등 소극적인 관리는 있어 왔지만, 제도권 밖에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는데,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에 나선다는 것은 관련 예산도 지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아주 높습니다.

비지정문화유산 관리는 현재 목록화 등 자원조사가 진행 중(20~24년/문화재청 직접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방안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앞으로 그 보존관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있어 현실적으로는 국가, 도지정, 시지정 문화유산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보존·정비에 투입되는 예산도 극심한 차이가 있습니다.

〈 23년도 익산시 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 예산 (활용 및 고도사업 제외) 〉

- 국가지정 9건 12,748,429천원(국비 8,923,900 도비 1,912,264 시비 1,912,265)
- 국가등록 6건 1,826,800천원(국비 913,400 도비 456,700 시비 456,700)
- 도지정 18건 982,000천원(도비 491,000 시비 491,000) / 향토유적 2건 350,000천원(시비)

올해 우리시 보수정비 예산에서 단적으로 보이지만 국가지정(24건/등록21건)과 도지정(60건/등록3건) 문화유산에 대한 대우가 극명합니다. 문화재청에서 비지정문화유산도 관리하겠다는 상황에서 도지정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청 차원에서의 국가지정

승격 혹은 도지정 문화유산 예산 확대 지원, 돌봄사업 확대 등).

역사문화권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역사문화권에 포함된 지자체들에서는 무언가 준비를 해야 할텐데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요?

우리시 경우 고도보존특별법에 따라 2004년 고도지정 후 2009년에야 지구지정, 기본계획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업이 2012년 이후에 진행되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지자체에서는 조직도 고려해야하고 기본적인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 해당지역이 기존 사적지거나 고도지역, 역사문화권역으로 중복되는 경우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구분을 잘 해 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현석 연구위원님의 발표자료를 통해 국가유산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전략에 대해 잘 들었는데, 특히 서울시 문화정책과(미래유산팀) 업무 공조 사례가 주목되는데 규모가 작은 지역사회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지요? 또 다른 사례는 없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익산시의 경우도 구도심지역에 숨리역사문화공간(국가등록문화재)이 지정되어 보존관리가 진행되고 있고, 또 같은 공간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항상 고민스러운 과제입니다.

아울러,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매우 중요한 바, 정부합동평가 등에서 문화유산 분야에 대한 평가 비중을 늘려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관련 업무 직원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도 함께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국가유산 체제전환으로 문화재청의 정책 자체가 큰 변화를 모색하고 발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그 방향과 궤를 같이 할 것이고, 문화재청에서는 각 지역에서 우리 문화유산이 차별 받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고 향유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예산과 행정력 지원을 통하여 지자체의 체계적인 문화유산 관리체계가 구축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브랜딩의 시대, 국가유산과 지역활성화 사업 연계 전략

서수정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국 사회는 저성장, 로컬지향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으며,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서울·수도권과 지방도시 격차 심화
- 이에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하여 국토부의 지역수요맞춤형 지역개발사업, 해수부의 어촌신활력사업 등 다양한 지역재생 사업 증가(2022년부터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역소멸위험도시를 발표하고 지역소멸기금을 마련하여 지원정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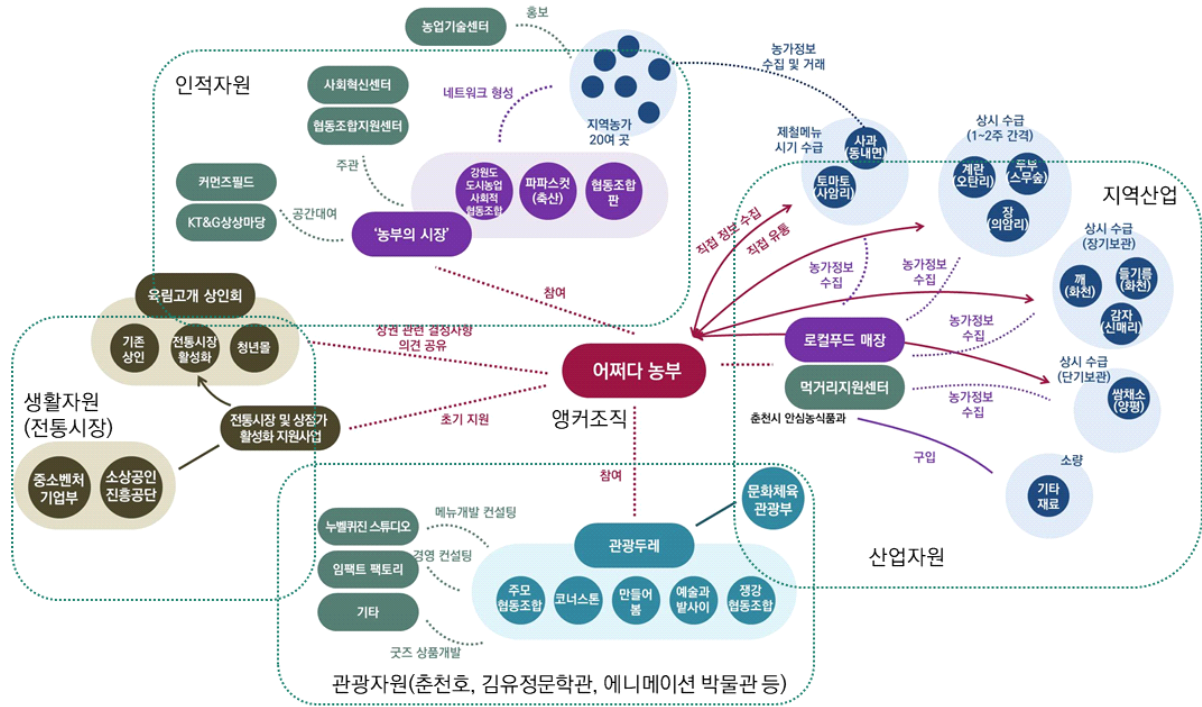


- 쇠퇴지역 활성화가 목표인 지역재생사업은 청년인구나 관계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전략을 공통으로 채택하고 있음. 관광활성화 전략도 그 중 하나
- 이를 위해 많은 정부지원사업에서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장소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여기서 지역자산은 경험과 가치를 소비하는 현대사회에서 장소가치를 높여 지역을 브랜딩 할 수 있는 필요조건으로 작동

* 장소브랜딩은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가치를 드러내 이미지화하고, 이를 상품으로 만들어 새롭게 만들어진 가치를 누구나 공유하고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과정

- 특히 건축공간연구원에서 기획한 지역재생 사업의 경우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자원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
- 그러나 계획수립 주체인 엔지니어링 회사는 자원조사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지자체 관련 계획이나 온라인에 의존하거나 지역주민 면담을 통해서 구전되는 이야기를 수집하는 수준에서 자산조사 수행
- 이에 고증되지 않은 건물이나 공간 정비에 재원을 투자하고 방치되는 부정적 순환구조가 반복되는 것이 현실(예를 들면 어촌뉴딜사업의 어느 지역에서는 일제 강점기 주민의 피난처였던 동굴을 복원한다는 명목으로 국비 신청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함)
- 「국가유산기본법」은 기존 문화재 보존 중심의 정책에서 미래유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무형 자산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재생사업과 긴밀하게 연계할 필요
- 법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지역의 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기록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다양한 지역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활용, 참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를 위해서 우선 문화재청은 지자체가 자산을 체계적으로 조사, 관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 가이드라인은 지역과 장소에 따라 유연하게 변용할 수 있도록 자산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 문화재 관련부서에서 자산조사를 위한 별도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기존 관련 계획(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군기본계획, 공간환경전략계획, 지역재생 관련 사업 마스터플랜 등)을 수립할 때 이 가이드라인에 준용해서 자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마련해 주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 두 번째로는 「국가유산기본법」 상 유산의 범주에 유무형 자산이 광범위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지역재생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유산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
- 오늘 사례로 발표된 전통막걸리나 전통시장 등은 산업유산으로 볼 수 있음. 지역의 농어업, 갯벌의 맨손어업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산
- 세 번째로는 지역재생에서 국가유산을 지속적으로 활용, 보존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협력과 참여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국비나 지방비 투입만으로 지역자산을 지속적으로 유지, 활용, 보존하기 어려움. 「공익신탁법」을 활용하여 공동체신탁방식으로 지역공동체가 국가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고려
- 예를 들면 지역공동체가 크라우드펀딩이나 공동체 재원을 투입하여 지역활성화 목적으로 국가유산을 활용할 경우, 국비나 시도비를 매칭 지원해 주는 지원정책 마련
- 마지막으로 타 부처 지역재생사업과 연계한 문화재청 차원의 시범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할 필요
- 지역재생은 긴 시간과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에 의한 거버넌스가 전제되어야 하며, 공간자산과 무형의 자산이 콘텐츠로 긴밀하게 결합되어야 함. 특히 지역이라는 장소에서 유

기적으로 연계, 확산되어야 지역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어느 한 부처의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이를 위해 부처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



포괄적 보호로의 성공적 확장을 중심으로

손 오 달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1. 유산 정책(heritage policy)의 확장

2023년 5월 공포된 『국가유산기본법』은 ‘유산(heritage)’을 통칭하는 용어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유산 정책분야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유산 정책이 종(縱)과 횡(橫)으로 크게 확장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종적 확장은 정책의 대상이 기존에 ‘국가· 시도 지정·등록 문화재’에 한정되던 것을 ‘비지정 유산’ 일반으로 확장함을 의미한다. 횡적 확장은 유산 정책이 다루는 정책 및 사업의 영역이 유산을 원형(전형)대로 보존(전)하는 조치에서 나아가 그 가치를 유지하고 향유·전승하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포괄하도록 확장함을 의미한다.

2. 비지정 유산 정책의 현안 (종적 확장 관련)

유산정책의 확장에 있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는 지역 현안 중 하나가 바로 ‘비지정 유산’에 대한 것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제14조 (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에서 비지정 유산을 ‘국가유산’의 범위 내에 포함하고, 이를 정책적 수단을 통해 보호할 것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제3장의 각 항에서 보호를 위한 수단을 적용함을 규정하는 데 있어, 국가유산이라는 통칭(統稱)을 적시해 지정과 비지정에 구분을 두지 않고 있다.

이는 물론 비지정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문화재에 준하는 규제를 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 조문들은 비지정 유산 역시 지정된 국가유산에 준하는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는 의의가 있다. 비지정 유산 역시도 가치의 근간이 되는 제반 요소(attributes)를 온전히 유지하고 주변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롭도록 보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규제적 수단의 적용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비지정 유산을 완전하고 진정성 있는 상태로 보호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위해서는 소유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지역 주민 공동체의 전향적인 이해와 지지가 필수적이다.

3. 목록 중심의 유산관리체계 확립의 필요성과 방안

국가유산 체제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포괄적 보호는 발표자 분들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목록 중심의 비지정 유산관리’의 구축이 선행되었을 때 비로소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비지정 유산은 현재 ‘국가 또는 광역도에 의해 지정된 문화재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가치가 있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법률이나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해 보호제도가 운영됨이 확인되는 향토유산, 미래유산, 근대건조물, 농업·어업유산, 현충시설, 산림문화자산 등이 이에 해당하며, 각 제도에 의한 지정 등이 검토되는 잠재적 유산 자원 역시 포함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들을 모두 포괄하는 목록은 작성된 바가 없다. 1980-90년대 전국 단위의 『문화유적분포지도』 발간 사업과, 2020년 이래로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가 가장 광범위한 수준의 유산 목록 작성 사례로 검토되기는 하지만, 이들은 건축, 유적, 자연물 등 ‘유형+부동산’의 성질을 띠는 유산자원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 지역별로 문화+자연+무형 유산을 모두 포괄하는 유산 목록을 작성해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호 대상 선별하는 기초이자 그 현황을 기록하는 자료가 된다. 이는 향후 지정·등록, 모니터링, 지원, 공동체 육성 등 제반 정책 활동의 기초로 적용될 수 있다.

유산 목록의 구축과 관리를 위해서는 목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함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 공동체와 지역 학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 주민 공동체는 그들이 거주하거나 애착을 갖는 지역에 보존·전승되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제보하는 활동가가 되고, 지역 학계의 전문가는 역사적 식견과 유산에 대한 지식에 기초하여 그 가치여부를 조사·판단하는 평가자가 되는 것이다. 지역 행정이 지역 주민 공동체 및 학계 전문가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목록의 작성과 유지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결점이 적고 신뢰성 있는 목록 관리 체계를 지속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법률을 통해 유산 목록의 지위를 명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목록의 작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가지는데, 첫째는 유산 목록을 통해 그것에 등재된 유산의 가치를 인정하는 ‘인증체계’로서의 역할이고, 둘째는 유산 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정책적 보호의 대상으로 명시하는 ‘관리대장’으로서의 행정적 기능이다. 이러한 효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유산 목록에 명확한 법적지위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문화유적분포지도, 지표조사 등으로부터 확인되는 구역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인정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사례를 검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상우 발표자님께 비지정 유산 목록관리와 관련해 어떠한 제도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지 여쭙고 싶다.

4. 국가유산 정책 추진을 위한 통합 지원조직의 운영의 필요성과 방안

유산정책의 확장에 있어 중요한 현안은 지역 유산 행정의 수용력(capacity)에 대한 사안이다. 2024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는 국가유산 체제는 그 시기를 같이하여 추진되고 있는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 유산 규제 합리화 등의 현안과 밀접하게 맞물려 새로운 행정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국가유산기본법』이 명시하는 기후변화 대응, 국가유산 복지, 국가유산 정보관리, 국가유산 교육, 산업육성 등의 시안과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정책이 지향하는 도시재생 성격의 사업들은 ‘수리·보수’와 ‘정비’ 등에 집중된 지자체 유산 행정의 전문성과 수용력을 명백히 초과한다. 즉, 문화재청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정책 안건이 하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 및 기초 시군이 이를 추진할 역량이 한정적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유산 체제를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부족한 지역 유산 행정의 수용력을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정상우 발표자께서는 문화재 행정 인력 확충의 법적근거, 문화재 거버넌스 그리고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셨고, 민현석 발표자께서는 서울시 미래유산을 위한 업무공조 강화방안과 연계가능한 서울시 내부 지원사업을 소개해 주셨다. 하지만, 다른 광역 시·도 또는 기초 시·군은 이러한 체계를 아직 구성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유산 전반을 아울러 지원 기능을 통합하는 조직을 각 시·군 또는 광역단체 단위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이와 관련해 ① 서울시와 같이 기존의 연구기관과 부서를 연계·협력하는 행정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 ② 시·군 또는 시·도의 행정부서를 확대하는 방안, ③ 통합 지원의 기능을 갖춘 별도 조직을 운영하는 방안(도시재생센터 등)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발표자 분들께서는 어떤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지 여쭙고 싶다.

국가유산 체제하의 지자체 행정방향

조 신 규

함안군청 학예연구사

국가유산 기본법의 의의

1962년 1월, 우리의 문화재를 보존,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문화재보호법이 제정·시행되었으며 그 해 12월 국보 송례문을 비롯한 183개의 문화유산들이 처음으로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그로부터 약 60년의 시간이 흐른 현재 지정문화재는 15,000여 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문화재와 이를 둘러싼 정책환경 역시 크게 변화하였다. 특히 ‘문화재’라는 제한적 용어의 사용과 기존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규정된 분류체계의 부적합성에 대한 지적과 변화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로 나누어진 지정 문화재 중심의 보호체계는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상대적 소외라는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국가유산 기본법은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국가유산 즉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의 보다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넓고 탄탄한 새로운 토대를 만드는 시작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국가유산 기본법 상 지자체의 책무

국가유산 기본법 제1조(목적)에서 기존 문화재보호법 제1조(목적)에서 명시되지 않았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중점 보호체계에서 포괄적 보호체계로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영역과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른 것이라 생각된다. 국가유산 기본법 7조(국가유산 보호정책의 기본원칙), 9조(위원회의 설치·운영), 10조(조사·연구)의 사항들은 기존 문화재보호법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으며 11조(국가유산에 대한 경비지원), 12조(인력 양성 등), 13조(국가유산의 지정·등록), 14조(포괄적 보호

체계의 마련), 15조(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서는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에서 명시되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지자체 행정의 방향

우선 용어와 분류체계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직명칭 변경과 더불어 기존 안내판, 안내책자 등에 나타난 문화재 용어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으로 새롭게 정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포괄적 보호체계를 위한 준비로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선택적으로 추진해온 향토문화유산 지정과 관리를 일제히 추진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법 제15조(역사문화환경 보호)에 따라 기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국가유산 기본법의 관점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 역사문화환경 보호 대상을 국가유산 전체가 해당되는 것인지 국가지정유산, 시도지정유산으로 한정되는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규정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면단위 보호라는 측면에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단 이러한 과정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생각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을 준용한다면 국가유산 구역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의 구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상의 강력한 규제는 존재하는데 비해 규제에 따른 반대급부의 지원사항이 없어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을 확대하는 등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향후 과제

국가유산 체제의 성공적 안착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책무 이행을 위해서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조직 또는 부서와 전담 인력이 반드시 수반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을 담당하는 부서와 인력은 존재하고 있어 법에서 명시한 규모와 인력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포괄적 보호체계 속의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은 비지정 문화유산의 보호와 미래 자산화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한정된 국가의 재정과 대부분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고려할 때 국가유산 관리에 전반적 부실화를 야기 할 수 있어 재원 마련을 위한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된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제25조(국가유산 교육)와 관련하여‘문화유산,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문화유산의 보호와 향유에 있어서 문화유산 교육은 가장 근본적 요소이다. 그러나 역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 정규 교과과정에서 문화유산 및 역사교육은 이전에 비해 축소되고 선택화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의 폭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미래 세대에 대한 문화유산 교육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법 제25조제2항에 명시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거점기관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인 문화유산 교육과 향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유산,
미래를 담은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지자체 행정방향:
지역균형발전을 중심으로

부
록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정]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유산이 우리 삶의 뿌리이자 창의성의 원천이며 인류 모두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 세대에 더욱 가치있게 전해 주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 3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제 4 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지역에 위치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조직 또는 부서와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보존·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해당 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5 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국가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어 새로운 가치를 더하며, 이를 차별 없이 자유롭게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유산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국가유산 보호 기반 조성

제 7 조(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에 관한 보호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유형적·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할 것
2. 국가유산과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을 함께 보호할 것
3.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가치 증진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할 것
4. 쉽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5.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간 조화·균형을 이루며,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 및 다른 정책·시책과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것
6.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양한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

제 8 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국가유산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의 유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형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 9 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의 유형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형별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조사·연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사를 통하여 국가유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확인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을 발견·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가치와 성격을 규명하고, 이를 보존·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유산에 대한 경비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인력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조사·연구 등 전문화된 관리 또는

일상적 활용과 참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이 지역의 통합과 자긍심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 3 장 국가유산 보존·관리

제13조(국가유산의 지정·등록) ① 국가는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시·도지정유산 또는 시·도등록유산 등으로 지정·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제14조(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역사문화환경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국가유산뿐 아니라 국가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국가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계획·개발사업이 국가유산 및 그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진단하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고도 및 역사문화권의 보존·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적·문화적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고도(古都)를 보존·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하여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을 보존·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매장유산의 발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또는 수중에 분포·매장된 국가유산(이하 “매장유산”이라 한다)의 성격 및 가치 규명을 위하여 매장유산을 발굴하거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굴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굴은 발굴로 인하여 매장유산 및 주변 환경에 필요 이상의 훼손을 가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매장유산 발굴을 위하여 발굴의 범위·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국가유산의 수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을 위하여 국가유산을 수리하거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유자등에게 수리를 지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수리하거나 수리를 지시할 경우 전통적 재료와 기법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국가유산의 매매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

제20조(자격 관리) ① 제17조에서 제19조까지에 따른 국가유산의 발굴, 수리 및 매매 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또는 단체만이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 국가유산의 발굴, 수리 및 매매 등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자격을 검증·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 소양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재난 예방 및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상시적·체계적 예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기후변화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 4 장 국가유산 활용·진흥

제23조(국민의 국가유산복지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관람·전시·교육·체험 등의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국가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경제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국가유산 향유가 제한되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국가유산정보 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들의 적용·융합을 통하여 국가유산데이터를 생산·수집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플랫폼 구축·운영 등 국가유산정보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국가유산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유산의 가치를 이해·습득하고 국가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국가유산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 및 인증제도 등을 실시·운영할 수 있다.

제26조(국가유산 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유산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27조(산업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매개로 하는 콘텐츠나 상품의 개발·제작·유통 등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취업·창업 등을 촉진시키고 국가유산분야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장 국가유산 세계화

제28조(국가유산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국가는 국가유산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국가유산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환, 인력교류, 공동 조사·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9조(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 ① 국가는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국가유산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외국유산의 보호) ①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 간의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가입한 유산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가입된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정·보호되는 유산(이하 “외국유산”이라 한다)은 조약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

되어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로 반입하려 하거나 이미 반입된 외국유산이 해당 반출국으로부터 불법반출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외국유산을 유치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외국유산을 유치하면 그 외국유산을 박물관 등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보관 중인 외국유산이 그 반출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반출된 것임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그 외국유산이 불법반출된 것임이 확인되었으나 해당 반출국이 그 유산을 회수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문화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유산의 반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반입된 외국유산이 자국에서 불법반출된 것임을 증명하고 조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라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약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유산이 반출국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또는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의 우수한 국가유산을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신청 대상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유네스코의 규정을 참작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이하 이 조에서 “세계유산등”이라 한다)을 비롯한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을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유산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32조(국가유산진흥원의 설치) ① 국가유산의 보존·활용·보급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가유산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연·전시 등 무형유산 활동 지원 및 진흥
 2. 국가유산 관련 교육, 출판, 학술 조사·연구 및 콘텐츠 개발·활용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매장 유산 발굴
 4. 전통 문화상품·음식·혼례 등의 개발·보급 및 편의시설 등의 운영
 5. 국가유산 공적개발원조 등 국제교류
 6. 국가유산 보호운동의 지원
 7. 전통문화행사의 복원 및 재현
 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⑤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⑧ 이 법에 따른 진흥원이 아닌 자는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3조(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 ①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이 관리·총괄한다.

②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4조(국가유산의 날) ①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유산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과태료) ① 제32조제8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9409호, 2023. 5. 16.>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재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재단의 사무는 국가유산진흥원이 승계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진흥원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단 소속 직원은 국가유산진흥원 소속 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문화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국가유산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국문화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문화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국가유산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국가유산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 3 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재보존”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으로 한다.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19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유네스코에 등재된 국가유산과”로 한다.

③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제1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62조에 따른 국유문화재는”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3조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으로 한다.

④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한다.

⑥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유문화재는”을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으로 한다.

⑦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7호의 “「문화재보호법」 제9조”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로 한다.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제7조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제37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제63조제1항제2호 중 “미관·문화재”를 “미관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⑨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4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로 한다.
- ⑩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2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수·복원·이전”으로 한다.
- ⑪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1항제7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⑫ 문화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호 중 “문화유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마목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한다.
- 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⑮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로 한다.
- ⑯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2항제1호나목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문화재 및”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 제21조제1항제8호 중 “문화재 및”을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 ⑰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55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⑱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 및”을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 ⑲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4호 중 “문화재의”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로 한다.
- ⑳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한다.
- ㉑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문화재·전통사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전통사찰”로 한다.
- ㉒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㉓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0조제4항제1호 및 제355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㉔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3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㉕ 한국조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마목 단서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 ㉖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memo



memo



memo